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20
----------	-------

발의연월일 : 2025. 12. 12.

발 의 자 : 윤준병 · 박희승 · 이성운
이병진 · 송옥주 · 임미애
이원택 · 손 술 · 서삼석
김 윤 · 문대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진행 도중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 국회의장으로부터 발언 제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송출용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여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함. 이는 국회의장의 의사 정리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8조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을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원활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물건 또는 음식물

2. 국회가 제공하지 아니한 음향·영상 증폭 및 송신 장치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한 의원에 대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155조제16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의2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4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반입 금지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였을 때

11. 제1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u>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u> <u>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① ----- -----다 <u>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u> -----. 1. <u>원활한 회의 진행에 방해가</u> <u>된다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u> <u>인정하는 물건 또는 음식물</u> 2. <u>국회가 제공하지 아니한 음</u> <u>향·영상 증폭 및 송신 장치</u> ② <u>제1항을 위반하여 물건 또</u> <u>는 음식물을 반입한 의원에 대</u> <u>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u> <u>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하</u> <u>여야 한다.</u>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 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	제155조(징계) ----- ----- ----- ----- -----. ----- -----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 9. (생략) <u><신설></u> <u><신설></u> <u>10. ~ 15.</u> (생략) <u>15의2.</u> (생략) <u>16.</u> (생략)	----- ----- --- 1. ~ 9. (현행과 같음) <u>10. 제14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에 반입 금지 물건 또는 음식 물을 반입하였을 때</u> <u>11. 제1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철거하거 나 사용 중지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 였을 때</u> <u>12. ~ 17.</u> (현행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u>18.</u> (현행 제15호의2와 같음) <u>19.</u> (현행 제16호와 같음)
---	--